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남 창진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
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
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안은 먼저,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
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·층수 등의
산정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. 현행 조례상 벽면을 이
용한 업소형 간판의 설치는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간
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주차건물 등의 경우
그 층수가 10층이고 높이가 40m라 하더라도, 층의 구
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건축물의 3층 이상에 해당하는
높이 또는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
우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
다.

둘째,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자를 현행 구청장에서 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상업용 뿐만 아니라 구청을 포함한 행정기관, 정당, 단체 등이 불법으로 게재하는 공공용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 효과를 높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